

서울특별시 마포구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6-53
----------	-------

제출년월일 : 2025. 4. .
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
1. 제안이유

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줄이기 실천 지침에 근거하여 공공기관 청사 내 1회용품 사용을 제한함으로써 생활폐기물 감량에 기여하고자 해당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공공기관 정의 규정 추가(안 제2조)
- 나. 추진계획의 수립 및 청사 내 1회용품 사용·제공 제한 등 (안 제4조~제5조)
- 다. 지원사업 대상인 포장재의 근거 법령 명시(안 제7조)
- 라. 민간위탁 수탁기관의 범위 변경(안 제9조)
- 마. 표창의 근거 조례 명시 등(안 제10조)

3. 주요 토의과제

없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1) 공공기관 1회용품등 사용줄이기 실천 지침(국무총리훈령 제911호)

나. 예산조치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

다. 합 의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타사항

- 1) 입법예고: 2026. 3. 5.~2026. 3. 25. (제출된 의견 없음)
- 2) 새마포담당관의 행정규제심사 검토결과: 원안 동의
- 3) 감사담당관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: 원안 동의
- 4) 가족정책과의 자치법규 성별영향평가 결과: 개선사항 없음

서울특별시 마포구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마포구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억제하고”를 “억제하고,”로, “보호하고”를 “보호함으로써”로 한다.

제2조제1호 중 “따른다”를 “따른 제품을 말한다”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“공공기관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.

가.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」에 따른 행정기구와 소속 기관 및 하부행정기관

나. 「지방공기업법」 등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(이하 “구”라 한다)가 설립한 공단

다.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출자·출연 기관

제4조부터 제9조까지를 각각 제6조부터 제11조까지로 하고, 제4조 및 제5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조(추진계획의 수립) ① 구청장은 1회용품의 사용 저감을 위한 체계적인 추진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1회용품 사용 저감 정책의 목표 및 추진방향

2.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한 홍보 및 교육
3. 1회용품 사용 저감 및 다회용품 사용 촉진을 위한 지원 사업
4.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5조(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·제공 제한 등) ①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의 청사 내에서 1회용품을 사용·제공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회용품을 사용 및 제공하지 않도록 권고할 수 있다.

1. 구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주최·주관하는 행사 및 회의

2. 구가 비용을 지원하는 행사

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구민 안전 확보 및 재난 상황 대비 등 구청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.

제6조(중전의 제4조)제1항 중 “**현지실사**”를 “**현지 실사**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**지정**”을 “**우수업체 지정**”으로 한다.

제7조(중전의 제5조)제1호 중 “**제4조**”를 “**제6조제1항**”으로, “**환경우수업체**”를 “**우수업체**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호 중 “**포장재**”를 “**포장재(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재료나 용기 등을 말한다)**”로 한다.

제8조(중전의 제6조)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**환경보호**”를 “**환경 보호**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호 중 “**홍보사업**”을 “**홍보 사업**”으로 한다.

제9조(중전의 제7조)제1항 중 “**민간협력**”을 “**민간 협력**”으로, “**제6조**”를 “**제8조**”로, “**민간단체, 공익법인 등(이하 “민간단체 등”이라 한다)**에 위탁하여 추

진”을 “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제1항 따라 민간단체 등에 사업을 위탁한 때에는”을 “제1항에 따라 위탁한 경우”로 한다.

제10조(중전의 제8조) 중 “법인·단체 또는 개인과 우수업체를 선정하여”를 “개인, 법인·단체 또는 우수업체에게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표창 조례」에 따라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1회용품 사용을 저감하여 폐기물 발생을 <u>억제</u>하고 1회용품 사용을 저감하는 업체를 홍보 및 지원하여 환경을 <u>보호</u>하고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“1회용품”이란 「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제15호에 <u>따른다</u>.</p> <p>2. (생략)</p> <p><u><신 설></u>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----- <u>억제</u> <u>하고</u>, ----- ----- <u>보호</u> <u>함으로써</u> ----- -----.</p> 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.</p> <p>1. ----- ----- ----- <u>따른 제품을 말한다.</u></p> <p>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<u>“공공기관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.</u>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<u>가.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」에 따른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</u>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<u>나. 「지방공기업법」 등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(이하 “구”라 한다)가 설립한 공단</u></p>

<신 설>

다.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출
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
관한 조례」에 따른 출자
·출연 기관

제4조(추진계획의 수립) ① 구청
장은 1회용품의 사용 저감을 위
한 체계적인 추진계획을 수립·
시행하여야 한다.

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
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1회용품 사용 저감 정책의
목표 및 추진방향
2.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한
홍보 및 교육
3. 1회용품 사용 저감 및 다회
용품 사용 촉진을 위한 지원
사업
4.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
고 인정하는 사항

<신 설>

제5조(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·
제공 제한 등) ① 공공기관의
장은 공공기관의 청사 내에서 1
회용품을 사용·제공하지 않도
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
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회용품
을 사용 및 제공하지 않도록 권
고할 수 있다.

제4조(환경우수업체 지정 및 해지) ① 구청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자와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경우 현지실사 및 평가 등을 통해 1회용품 사용억제 환경우수업체(이하 “우수업체”라 한다)로 지정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우수업체 중 법 제10조를 위반하여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에는 지정을 해지하여야 한다.

제5조(지원사업) 구청장은 1회용품 사용 저감 및 다회용품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구민 등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.

1. 제4조에 따라 지정된 환경우

1. 구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주최·주관하는 행사 및 회의

2. 구가 비용을 지원하는 행사

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구민 안전 확보 및 재난 상황 대비 등 구청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.

제6조(환경우수업체 지정 및 해지) ① -----

 --- 현지 실사 -----

 --.

② -----

 - 우수업체 지정-----.

제7조(지원사업) -----

 -----.

1. 제6조제1항----- 우수업

수업체 홍보사업

2. 1회용품 및 포장재 사용 저감을 위한 사업

3. (생략)

제6조(교육과 홍보) ① 구청장은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환경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.

1. (생략)

2. 1회용품 사용 자제 및 다회용품 사용 관련 홍보사업

3. (생략)

제7조(민간위탁) ① 구청장은 구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민간협력을 유도하기 위하여 제6조 각 호의 사업을 민간단체, 공익법인 등(이하 “민간단체 등”이라 한다)에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.

② 구청장은 제1항 따라 민간단체 등에 사업을 위탁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8조(표창) 구청장은 1회용품 사용 저감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법인·단체 또는 개인과 우수업

체 -----

2. ----- 포장재(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재료나 용기 등을 말한다) -----

3. (현행과 같음)

제8조(교육과 홍보) -----
----- 환경 보호-----

1. (현행과 같음)

2. -----
----- 홍보 사업

3. (현행과 같음)

제9조(민간위탁) ① -----
----- 민간 협력-----
----- 제8조 -----
-----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
이나 개인에게 위탁-----
-----.

② ----- 제1항에 따라 위탁한
경우 -----
-----.

제10조(표창) -----
----- 개인,
법인·단체 또는 우수업체에게

체를 선정하여 표창할 수 있다.

제9조 (생 략)

「서울특별시 마포구 표창 조례」에 따라 -----.

제11조 (현행 제9조와 같음)

서울특별시 마포구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

- 해당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2조제2항

3. 미첨부 사유

- 사업 추진에 관련되는 비용 미발생

4. 작성자

작성자 이름	환경녹지국 자원순환과 진혜숙
연 락 처	02-3153-9213